

연구논문

## ‘불능’이 되는 몸: 신체, 기술, 재/생산의 정치경제\*

황지성\*\*

〈국문초록〉

이 글은 몸과 재/생산을 둘러싼 페미니즘의 정치학이 ‘정상적’이라 여기는 규범적 몸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육체기술과 정치경제의 작동을 총체적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몸과 인구를 정상/비정상적으로 나누고 타자의 몸(의 생산성)을 수탈, 폭력을 가해왔으면서, 오늘날 치료·향상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유주의 우생학에 이르는, 생명정치의 시간의 겹쳐짐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역사에서 권력은 언제나 미래 인구의 ‘생산성’, ‘진보’,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생산하는 몸들에 대한 더 강력한 감시와 통제를 행사하고, 수많은 타자들을 비/정상과 비/합법 주체의 경계로 유연하게 (재)배치해 왔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둘러싼 페미니즘 정치학은 가부장제 젠더체제 뿐 아니라 남녀 모두와 인구집단을 ‘정상성’에 의해 구분하고, 재/생산을 보장/박탈하기도 하는, 맥락적이고 다층적 권력 작동을 분석하는 작업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몸, 재/생산, 육체기술, 정치경제, 페미니즘 정치학

\* 이 글은 2016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젠더와 테크놀로지: 여성주의적 미래 전망〉(2016년 11월 19일)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표문 “생명기술과학시대 장애와 재생산”의 일부를 수정, 보완해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세심한 지적과 논평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논문 작성 과정 내내 같이 토론하고 깨우침을 준 〈성과 재생산 포럼〉 동지들 그리고 김보명 박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과 박사과정(livetdans@gmail.com)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들어가며

2016년, ‘낙태죄’가 다시 화두가 됐다. 실정법 상 사문화 되다시피 한 ‘낙태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감이 증가하면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신중지 행위 관련 처벌과 단속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소환되었다. 이에 따라 페미니즘 운동은 ‘낙태죄’ 규정과 임신중지 시술 고발 조치 등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2016년은 특별히 ‘검은 시위’를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움직임들을 통해 거세게 ‘낙태죄’ 폐지 요구가 쏟아져 나온 해였다. 이를 의식해 2016년 말 대선을 비롯 여러 정치적 논의 장에서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미약하게나마) 되고 있으며, 낙태죄 찬반에 대한 대중의 여론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낙태죄’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 역시 다양화되었다. 페미니즘은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침해하는 강력한 역사적 상징으로, 생명권이라는 교조적 논리를 근거로 여성의 성과 신체 통합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양현아, 2005). 국제적 논의 등을 통해 확립된 ‘재생산권리’를 발판 삼아 그간 한국에서도 여성의 몸과 인간 재생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젠더 불평등과 가부장적 구조를 심문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그런 가운데,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성과 재/생산<sup>1)</sup>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인구 조절’ 및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들의 몸의 자율권을 침해하

1) 일반적으로 ‘재생산’은 임신과 출산의 좁은 범위의 행위만을 뜻하지 않으며, 인간 재생산을 통한 한 사회 내 관계, 문화, 경제적인 것 등의 재생산을 아우른다. 다만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임신과 출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할 때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간 재생산을 포함해 한 사회전체의 관계, 문화, 경제적인 것의 총체적인 ‘생산/재생산’의 복합적 관계를 지칭할 때는 ‘재/생산’으로 구분해 표기했다. 동시에 ‘재/생산’으로의 표기는 궁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이라 범주화되는 ‘생산’과 그 밖의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 여기는 (인간)재생산의 이분법을 문제 삼고, 그 둘이 상호 교차되고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진다.

는데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와 같이 국가가 보호·육성하려는 규범적 인구에서 벗어난 다양한 ‘소수자’의 성과 재/생산은 체계적으로 억압되거나 범죄화되고 있는 등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성과 재생산 포럼, 2016).<sup>2)</sup> 그런가 하면, 2016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혐오’ 현상에 대한 폭발적 대항 움직임 속에서 ‘낙태죄’ 폐지 의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낙태죄’를 가부장제 젠더체제 내 ‘여성/여성 몸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구성해내는 움직임이 펼쳐지기도 했다<sup>3)</sup>.

‘낙태죄’ 정국을 통해 현재 전면화되고 있는 페미니즘 내의 이러한 목소리‘들’은, ‘여성’의 몸과 성, 재/생산을 둘러싼 정치학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복잡하게 혼재되어 갈등, 긴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기실 재/생산과 몸은 페미니즘에서 오랜 역사를 관통해온 담론들 간의 각축과 긴장,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융합체로, 현재 한국의 ‘낙태죄’ 정국이 이것들을 한꺼번에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페미니즘 정치학은 어떠한 쟁점들을 의제화하고 통합해 변화, 확장해 나가야 할지를 그려보는 시도가 절실하다. ‘낙태죄’가 여전히 성별규범에 의한 정상적 ‘여성’ 범주를 끊임없이 소환해 내고 있는 가운데, ‘소수자’에 의해 제기되는 몸, 섹슈얼리티, 재/생산 정치 그리고 첨단기술과학과 신자유주의 체제 재편 등 복합적 상황의 전개는 인간의 몸과 성, 재/생산에 관한 논의를 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합된(다고 가정된) 정체성으로 ‘여성’과, 생명기술과학과 글로벌 시장에 의해 분자, 유전자적 물질 혹은 난자, 정자, 자궁(이를테면 ‘대리모’ 시장)과 같은 신체의 일부로써 취급되고 거래되는 인간의 몸(김선희, 2016; 클라프, 2015; 해러웨이, 2007;

2) ‘성과 재생산 포럼’이 2016년 실시한 연속 포럼 자료 참조. 관련 내용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2016년 ‘낙태죄’ 논란에 대항해 조직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카페 BWAVE 비웨이브’가 “사퇴충 처벌”을 대표적 슬로건의 하나로 내걸었고(나영, 2017), “나의 자궁은 나의 것”과 같은 구호가 ‘검은 시위’에 지속적으로 등장한 예 등을 들 수 있다.

Price and Shildrick, 1999) 간의 커다란 간극, 그리고 사회 재/생산의 총체적 위기(백영경, 2017) 등 문제가 각자 서로 따로 떼어진 별개의 문제로 인식될 때 더 폭넓은 정치적 연대를 가로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성’이 착취와 폭력에 놓이는 다양한 현실에 제대로 개입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퀴어페미니즘 연구자인 설리반과 스트라이커(Sullivan and Stryker, 2009)는 “육체기술학(somatechnics)”<sup>4)</sup>이란 범주로써 “신체(soma)” 혹은 육체성(corporeality)과 지식·담론의 총체로서 “기술(technics)”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침투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광범위한 윤리·정치적 비평 실천을 제안한 바 있다. 설리반과 스트라이커에 따르면, 기술과 몸(자아)의 공고한 이분법(이는 정신과 몸 이분법의 데카르트적 서양 근대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이 지배적인 인식이지만, 기실 기술은 권력/지식 체제와 함께 언제나 체현된 주체(embodied subjectivities) 그리고 흔히 ‘자연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범주들을 구성해 낸다(2-3). 이러한 몸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강조는, 지식과 담론으로 구성되는 근대 권력이 인간의 ‘몸/성’을 규율하고 객체화함으로써 통치의 가능성을 일반화한다고 한 푸코(Foucault)의 권력 이론, 그리고 여성이라는 체현된 주체의 근간이자 생물학적 본질로 상징되는 몸(sex)이 이미 권력의 구성물임을 분석한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t) 페미니즘”(Price and Shildrick, 1999: 5)의 몸 이론과 공명한다. 이렇듯 권력과 주체, 몸/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분석이 밝히고 있듯, ‘몸/성’과 ‘기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구성적이고

4) ‘soma’는 그리스어로 몸(body)를 뜻하는 *sōma*에서 유래했다. 또 ‘기술’은 일반적으로 상상되듯 단지 ‘기계적’인 무엇이 아니며 담론과 지식의 총체이자 인식론이다. 육체기술학이란 명칭은 2003년 개최된 “몸을 변화시키기, 자아를 변화시키기(Changing bodies, changing selves)”라는 이름의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적 학술 논의의 장을 통해 주조됐다. 일군의 학계 그룹은 몸과 기술의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그를 통해 육체성 자체가 형성 내지 전환(transform) 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명칭을 창안해 냈다(Sullivan and Stryker, 2009: 2-3).

역동적 과정이며, 따라서 규범, 권력, 통치에 대한 분석적 개입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육체성을 형성하는 권력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Sullivan and Stryker, 2009: 4).<sup>5)</sup>

이와 같이 육체기술학 그리고 그것과 상당한 친연성을 가지는 퀴어 정치학의 관점에서 지금의 ‘낙태죄’ 정국을 바라볼 때, 여성의 신체 통합성을 침해함에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여성의 몸을 ‘애 낳는 기계’로 강제하는 현실은 가부장적 젠더체제에만 설명될 수 없다. ‘낙태죄’라는 범조항이 역사적으로 ‘여성’의 몸/육체성을 ‘애 낳는 기계’로 강제하고 담론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강제를 경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고령의 여성, 10대 여성, 빈곤 노동층 여성, 장애여성, 퀴어 여성, (특정한 신분의) 이주 여성, 성매매 여성 등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은 신체 통합성은 물론 삶과 존재 자체를 더욱 위협한다. 이는 결국 ‘여성’도, 출산 행위도 당연하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질문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어떻게 인간(여성)의 육체성과 행위를 정상/비정상적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가임을 시사한다. 인구절벽과 고령화 저출산 사회라는 ‘위기’를 지배권력 자신의 위기로 인식하기보다 특정 여성

---

5) 육체기술학의 상당부분은 현재 퀴어이론/실천이라 부르는 영역과 정치적, 인식론/방법론적인 것들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퀴어이론이 가장 자연스런 것으로 인식되는 인간 행위와 존재의 ‘규범/정상성’과 불화하는 정치학이자 학문이기 때문이다. 설리반과 스트라이커는 그러나 퀴어함이 ‘성적인 것’과 그러한 정체성으로 한정돼 인식되어 온 경향 때문에 더 넓은 실천과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비해 육체기술학은 좁은 의미로 성적인 것이나 정체성만으로 치부되는 영역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동시에 ‘성적인 것’과 결코 분리될 수도 없는 육체/기술을 문제화 하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개입이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퀴어이론/실천은 ‘퀴어함’을 정체성뿐 아니라 “지배 권력을 탐문하고 지배 권력과 다투며, 권력이 끊임없이 비규범적 존재를 재/생산하는 작동/장치를 문제 삼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해 가는 중이다(루인, 2017: 64-5; 정민우, 2012; 토리, 2010). 기존의 레즈비언, 게이에 의해 주도된 정체성 정치학 뿐 아니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포함해 다양한 차이들을 구성해내는 권력의 매트릭스, ‘정상성(normativity)’ 자체를 문제 삼는 이론과 실천 모두 퀴어 정치학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의 성과 몸을 통제하고 미래 태어날 생명의 양적 증가에만 관심을 돌리려 하는 권력에 대한 대항은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등과 서로 맞물려 모든 인간의 몸과 성, 행위를 정상/비정상으로 나누고, 어떤 몸은 '생산적'이라 여겨 보호·육성하면서 또 어떤 몸은 '비생산적'이라 여겨 재/생산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국가 통치 및 권력관계에 대한 총체적 탐문작업에서부터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낙태죄'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몸과 육체성을 구성해내는 육체기술의 한 종류로, 오늘날 점점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생명기술과학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산업 중심의 초기 자본주의 경제가 축적의 한계에 도달하자 금융, 서비스, 지식산업 등의 분야로 자본이 축적의 방식을 전환하면서, 인간의 몸(신체 부위 및 조직)과 건강, 질병 등을 다루는 생명과학은 가장 각광받는 지식과 산업의 복합체로 주목받게 되었고, 따라서 생명기술과학의 확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게 된다(서동진, 2007; 송제숙, 2015; 라잔, 2012; 쿠퍼, 2016; 클라프, 2015).<sup>6)</sup> 생명과학이 다루는 삶과 죽음, 건강, 질병 등 모든 인간의 생명 현상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자유주의 우생학"(Puar, 2014: 180)을 발동시킨다. 과거 우생학이 특정 부류의 인간에 대한 격리와 억압, 처벌 등의 시도로 나타났다면, '자유주의 우생학'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 삶과 실천에 기입되는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작동되며, 특히 미래 인구의 재생산은 여기서 가장 첨예한 각축장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이 글은 여성의 몸/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페미니즘 정치학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특정한 주체들과 몸의 '비/정상성'을 만들어 내는 권력에 대한 탐문으로 확

6) 우리나라는 10여년 전 '황우석 스캔들'을 통해 이를 통렬하게 체감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 기대와 투자, 그리고 줄기세포 등을 통한 '치료', '건강' 산업 열풍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장될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정치경제의 형성과 함께 사회 재/생산을 떠받치기 위하여 정상과 타자의 몸이 구분된 역사, 그리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구분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우생학에서부터 최근 생명공학기술까지 육체기술의 전개 과정은 몸과 육체성을 ‘정상성’에 의해 (탈/재)배치해 내는 권력 장치의 계보로써 주목해야할 대상이다. 이어서, 퀴어 그리고 장애의 몸이 재/생산과 관련해 경험하는 구체적 문제와 이를 둘러싼 담론을 살펴본다. 퀴어/장애인의 몸과 임신·출산 행위는 육체기술과 정치경제의 역동이 미래의 재/생산을 위해 현재 살아있는 주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비생산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면서 비/정상, 비/합법의 경계에 내몰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가 현재 한국 페미니즘 정치학 특히 몸과 재/생산 논쟁을 둘러싼 정치학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본다. 지배적 몸 규범과 ‘정상성’에 의해 개인과 인구집단에 위계적 구분이 가해지고(백영경, 2006), 국가가 이에 따라 특정한 출생의 생명을 선별적으로 장려/억제하기도 하고 인권을 보장/박탈(나영정, 2016)해내기도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 ‘생명권’과 ‘저출산’을 내세우며 안전하게 숨어있는 헤게모니 남성중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주의 및 자본주의의 정치적 이해관계(모한티, 2005)를 드러내는 출발점이다. 그것은 정체성들의 경계를 넘어서 권력/정상성에 대한 교차적 분석학을 요청하며, 더욱 확장된 연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2. ‘생산적’ 몸: 자유주의 국가 ‘우생 정책’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생명 시장’까지

푸코에 따르면 근대 자유주의는 (전근대 왕권을 대신해) 다양하고 미세

한 제도적·지식적 권력장치를 통해 인간의 몸을 감시하고 규율화, 규범화함으로써 통치의 가능성을 일반화한다(푸코, 2003; 2004). 근대 권력의 춤춤한 감시, 관리, 조율의 표적이 되는 몸은 단지 유기체로서 몸이 아니며, 근대 국가 체제의 재/생산을 담보하는 “기계로서” 그리고 하나의 “종(種)으로서”의 몸이다(푸코, 2004: 155-156). 따라서 출산, 성(性), 인구의 장애나 질병, 수명 등 살아있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통제와 감시망에 의해 관리된다. 근대 보건의료체계의 통계학의 제도화, 복지제도 등은 이렇게 해서 체계화된다.

본래 자본주의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의 개입 최소화와 경쟁에 기초한 시장 교환의 자율적 움직임이 평등과 번영을 보장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학적 생명들이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며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노동력’은 산업 중심 자본주의 경제가 축적을 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된다.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론의 국가개입 최소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은 자본주의 생산력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자 가치의 원천인 ‘생명’을 경제적 생산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생명의 안녕을 보호하고 육성해 내는 작업 즉, (임금 노동 외) 사회적 재/생산과 복지에 적극 개입했다(송제숙, 2016; 에스핑앤더슨, 2007; 쿠퍼, 2016; 클라프, 2015).<sup>7)</sup>

7) 한국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친 후 고전적 형태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았다. 군사정권의 개발국가 통치는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고 수탈해 내지만, 이는 국가 근대화의 목표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정당화되었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간 출신의 정권이 세워지지만, IMF 금융위기와 세계적 탈산업화 기류 속에서 개발국가 수준으로 노동인구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 독특한 복지국가 체계가 한국에 등장한다. 인류학자 송제숙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수립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한 마디로 “생산적 복지”, “노동 복지”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생산과 축적을 극대화 하는데 노동인구를 동원하고 통제해 낸 기술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란 선언과 일견 모순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란, 말 그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성에 기능적일 수 있는 인구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이 개발국가 통치를 관통하며 이와 같이 구축한 신자유주의 복지 체계는 그러나 전혀 새로운 통치형태는 아니라고 한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 일반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생명은 ‘노동력’으로 ‘생산성’ 가치를 지니는 한에서만 합법적 주체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여기에 젠더와 섹슈얼리티, 인종 등에 기반한 ‘정상성’ 규범이 온갖 배제를 작동시킨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듯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규범적 노동력은 (백인, 이성애자, 건강한 육체를 가진) ‘남성’으로 제한된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복지체제의 근간은 이러한 배제와 구분에 의해 형성되었다. 즉, 여성은 남성 노동자와 혼인을 통해 ‘가정주부’로서 (무급으로) 재/생산 노동을 수행해 노동자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구축된 모델이 자유주의 복지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페테리치, 2016; 프레이저, 2017; Corna, 2013; Dwyer, 2013).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정상성’과 규범적 육체성은 이와 같이 근대 초기 자본주의 ‘정치경제’에 핵심적 물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규범을 둘러싼 구분과 위계화는 여성이라는 타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식민지와 노예제도를 통한 인종적 타자(콜린스, 2009), 그리고 통계적 평균에서 벗어난 신체적이고 성적인 ‘비표준’, “변이”, “일탈”을 부적절함이나 질병으로 여기고 그러한 부적절함을 제거해 모든 몸이 ‘표준’, ‘정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지식과 실천으로써 우생학적 타자(Davis, 1995) 등 다양한 타자는 근대 권력이 주도해낸 산물이다.<sup>8)</sup> 근대 초기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등 정치경제적 상황은 남/녀의 이원 섹스 체계(Connell,

---

가지로 일관되게 ‘노동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구만을 선별적으로 육성해 내는 생명정치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송제숙, 2016: 77-85).

- 8) 우생학은 당대의 주류 생물학 이론, 즉 다윈 진화이론에 근거한 응용 생물학이었다. 장애학자 데이비스(Davis, 1995)에 따르면, 다윈 진화이론은 장애인을 진화적 결함으로써 간주하여 자연 선택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적 ‘손상’을 제거하는데 집착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이라는 외피를 쓴 우생학이 실은 당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인간 신체에 병리적 특성을 부여하고 구분 짓기 하는 데 활용됐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으로 분류된 인간 특성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뿐 아니라 ‘범죄경력’이나 ‘가난’, 양성유우(오늘날의 ‘인터섹스’) 등을 모두 포괄했고, 이들 모두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몸으로 설명된다.

2012; Fausto-Sterling, 2000) 뿐 아니라 인종 간의 차이(두건, 2017; 콜린스, 2009), 질병·장애·변태 등을 아우르는 우생학적 차이(푸코, 2004; Davis, 1995) 등 온갖 인간 종의 차이를 '발견'해내 위계화하는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정상/비정상의 이분법과 타자의 몸(의 생산성)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토대를 떠받치는 데 핵심적이다.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명하는 논리들(대표적으로 두개골 사이즈로 여성의 열등성을 증명하려 했다)은 여성을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 남성의 부속품으로 구성하면서(하정옥, 2014) 여성의 재/생산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 또 오늘날 자본주의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는 흑인 노예노동에 대한 착취 없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서 인종과 젠더, 장애 등 몸의 타자성은 서로 결합, 교직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젠더, 섹슈얼리티 및 인종의 장애화, 그리고 장애의 인종화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규범적 타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임신·출산 행위를 금지하는 강제 불임 시술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929년부터 74년도 까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생학적 강제 단종 프로그램(sterilization program)을 실시한 주이다(Murdock, 2013).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2년 마침내 피해자들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제 단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성적 문란과 빈곤)”, “흑인 여성”, “아이큐 70이하의 남녀”, “가난한 가족의 아이들”(Murdock, 2013) 등이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자본축적의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노동과 '생산성'의 가치측정이 달라짐으로써,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는 생명, 규범적 몸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재구성된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의 성장과 축적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제적으로 금융자본을 이용

한 새로운 축적 경제체제로 개편, 즉 신자유주의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부채를 떠안게 된 주변적 개발도상국가 및 노동자 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금융자본이 강제하는 사회적 삶으로의 구조개편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김주희, 2015; 두건, 2017; 마라찌, 2013; 박찬중, 2014; 엄혜진, 2008; 페데리치, 2016). 금융자본은 기업 규제완화, 노동력 구조조정, 복지 시스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개편을 강제함으로써 기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 체제가 노동력으로서 규범적 몸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호의 임무를 떠맡았던 것을 끊어내고, 철저히 금융자본의 이윤 축적을 중심으로 한 통치를 하도록 강제한다.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생산성’으로서 그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던 규범적 몸은 이제 ‘잉여’, ‘예비 실업자’로 지위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그 속에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생명에 대한 안전망 철회와 몸의 생산성 착취가 더 용이해진다. 또한 이러한 재/생산의 ‘불능’ 속에서 취약해진 생명들 개개인은 보다 직접적인 금융적 수탈의 토대가 된다(라잔, 2012; 최철웅, 2016; 페데리치, 2016; Puar, 2014). 임금노동이 ‘생산성’을 담보하던 자리에 취약해진 몸과 생명 그 자체가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대신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생산적’ 몸의 재/생산을 떠맡친 생명들, 즉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타자들은 자연스럽게 더욱 극심하게 재/생산의 위기 혹은 수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누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주체인가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그보다, ‘생산성’이라는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비정상’, ‘비합법’적 존재의 ‘불능’의 몸도 ‘생산성’으로 포섭되도록 추동되며, 이를 위해 신체 그 자체는 물론 조직, 장기, 유전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시장 경제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상품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때문에 ‘불능’의 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잃는 것이 되고, 동시에 재/생산의 ‘불능’으로 점점 더 ‘불능’이 되도록 내몰리는 몸들은 개인

적인 ‘향상(enhancement)’, ‘치료’, ‘재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부추겨진다(Kim, 2017; Metzl, 2010). 말할 것도 없이 치료, 향상의 노력에 따라 오는 개인들의 소비, 대출에의 의존은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윤이다(Puar, 2014; 2015).<sup>9)</sup> 신자유주의 시대 생명정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몸 그 자체를 자본의 이해를 위한 직접적 통치의 대상으로 포섭한다.

### 3. 자유주의 우생학과 ‘불능’의 생산성

‘자유주의 우생학’은 ‘비정상’ 인구를 선별하고 격리한 과거 우생학과 달리, 생명기술과학 경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건강’, ‘능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부추겨지는 상황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육체기술’의 하나로서 생명기술과학은 단지 인간의 몸과 생명에 과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생명 자체를 이해하는 오늘날의 인식론이다. 생명작용을 DNA와 등치시키는 작업은 생명을 “정보화된 몸”, “테크놀로지”(클라프, 2015: 347)로 인식하게 하고, 이는 자본의 투자와 직결된다.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고가의 유전자 진단으로 미래에 유방암 ‘가능성’을 선제 방지하고자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백

9) 장애인 인권운동은 장애인의 몸이 우생학과 의료에 의해 병리화되고 ‘치료’, ‘재활’, ‘향상’의 대상이 되게 하는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대해 온 오랜 역사를 갖는다. 장애 정치학은 장애인의 몸이 열등함이 아닌 ‘차이’이며, 병리화가 아닌 ‘정체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몸/정체성 정치학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정치학은 ‘차이’ 자체를 구성해 내는 다층적 권력을 근본적으로 문제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웬델, 2013). 사회경제적 상황이 점점 더 많은 몸들을 취약함과 위협에 내몰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자발적인 ‘향상’, ‘치료’의 노력이 부추겨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장애/비장애의 경계나 ‘탈병리화’의 의미는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새로운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영경, 2013). 질병이나 장애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예비환자/소비자”(라잔, 2012: 225)가 돼 DNA, 세포조직 등에 대한 진단을 받는다(즉 진단 테스트를 ‘소비’한다).

‘유전자 결정론’은 유전자가 실제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의 묘사가 아니라(이는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의 욕망으로만 가능하다), 유전자 단계까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욕망과 기대가 투사된 말이다. 유전자 결정론은 그렇게 해서 질병이나 쇠약함, 죽음 등 유기체로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몸의 경험에 (실제 ‘과학적’ 예방이나 치료 가능성 여부를 떠나)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몸 통제를 수행하게 한다. ‘잠재적’ 우울증 환자나 ADHD ‘위험’ 어린이, 비만 ‘위험’ 환자 등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는 이와 같은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속에서 세계적인 거대 제약 기업들은 자본을 독식하고 있다(라잔, 2012; Puar, 2014). 결국 몸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 전환, 즉 질병이나 쇠약함의 원인과 해결책이 오로지 자기의 몸 안으로 의료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것으로 상상되는 세계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몸들은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향상된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 소비를 통해 끊임없이 측정 및 진단되어야 할 뿐이다. 자유주의 우생학이 생산해 내는 몸의 새로운 규범, ‘생산성’은 여기서 탄생한다.

당연히 이 속에서 취약한 생명들은 더더욱 위험에 내몰린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학자금과 온갖 카드 대출, 감당하기 힘든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하고 각박한 삶에 다양하게 따라오는 신체의 쇠약과 질병 등 총체적 재/생산의 위기는 오늘날 세대나 성별을 막론하고 노동하는 서민 및 빈곤층의 일상이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의 소득에 대한 기대)를 담보로 기본적 의식주 등 일상의 재/생산을 위해 대출에 의존

한다. 부채는 매일 매일의 노동으로 그 대출이자를 상환해야만 하는 상태를 뜻하지만,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노동구조는 이들에게 몸의 쇠약, 질병, 장애 상태를 더 많이 야기한다. 기실 생계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지만, ‘몸’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맨 몸’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조은, 2013)에게 몸의 쇠약과 질병, 장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유주의 우생학의 추동 속에서 또 다시 부채가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따라서 “몸의 불능과 쇠약은 자본의 이윤이 되고, 불능과 쇠약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노력 역시도 이윤이다”(Puar, 2014: 181). 비규범적이고 비생산적인 몸들이 병리화되고 재/생산을 착취당하는 현실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자유주의 우생학은 비/규범적 몸·정체성을 가로지르며 정상/비정상, 생산성/비생산성의 조건을 갱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정치의 이와 같은 “시간의 겹쳐짐”(Kim, 2017: 2)은 특정 주체들의 재/생산하는 일상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4. 유전자로 결정되는 생명의 자격과 비/합법 주체의 갱신

미국의 한 농인/레즈비언 커플의 장애아 출산 이야기가 뒤늦게 한국에도 소개됐다(샌텔, 2010). 2001년, 농인/레즈비언 커플은 유전적 농인 남성으로부터 정자공여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농인 자녀를 출산했다. 보조생식기술이나 출산 산전 검사는 장애아 출산의 가능성을 선별해 내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정확히 ‘반대’로 적용됐다.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미국 언론들과 독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었다(샌텔, 2010).<sup>10)</sup> 그리고 몇 년

후 영국은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 사례와 같이 생식기술의 ‘반대’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시행한다(Emery, et al., 2010).

레즈비언 커플이자 농인인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농인 커뮤니티 안에서 ‘자연스럽게’ 농인 정자기증자를 찾아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장애’라는 개인적/의학적 손상 모델이 장애인을 인식하는 보편적 틀이 되었지만, 농인들은 비장애인/음성언어 중심의 규범으로 인해 타자화되며, 때문에 이들은 ‘수어(手語, sign language)’라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문화적 소수자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농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 즉 ‘농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청각장애인’이라는 명칭과도 차별화를 둔다). 농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농인들 간의 성적인 친밀함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동성 커플인 두 사람은 농 문화 안에서 정자 공여를 받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이성 커플이었어도 이들 사이에서 장애가 유전된 아이를 출산할 확률은 동일하게 존재한다. 애초에는 정자은행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선천적 장애가 있는 남성의 정자 공여는 배제된다는 정자은행의 규정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고 대신 농인 커뮤니티를 찾았다(Kafer, 2013).<sup>11)</sup> 정자은행의 이와 같은 규정은 “잠재적 부모의 적합성에 대한 우생학적 고려”(76)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퀴어’와 ‘장애’라는 이들 존재의 복합적 상황과 임신·출산 행위가 여론의 일방적 비난을 촉발한 것은,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상성’ 규범의 상호작용을 드러낸 것이다. 다양한 진영의 개인과 집단들이 이들에

---

10)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를 필두로 다양한 미국 매체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워싱턴 포스트』에 2002년 3월 31일에 실린 해당 기사 제목은 “그들만의 세계(A world of their own)”이다.

11) Kafer, A.(2013), “Debating feminist future: Slippery slopes, cultural anxiety, and the case of the Deaf lesbians”. 이하에서 이 글의 인용은 페이지 수로만 표시함.

게 “이기적”(77) 선택을 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퀴어나 장애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의 (소수) 여론 역시도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해 “자연스럽지”(78) 않게 장애아동의 출생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자은행을 이용한 임신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라면, 그러한 비판은 농인/레즈비언의 존재조건과 임신·출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앞서 미국 정자은행의 장애 배제적 규정은 이미 언급했지만, 의료보험 정책에서 역시 유사한 배제적 규정은 존재한다. 미국에서 보조생식기술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난임/불임’ 진단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성에 성관계가 부재하는 레즈비언이나 비혼여성들에게는 그마저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sup>12)</sup> 이 속에서 사회에서 주변부에 몰린 사람들(가난한 사람, 비백인, 장애인, 퀴어 등)은 결과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기 쉽고, 실제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금융자본의 전폭적 지원 하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연구 분야는 ‘청각장애’, ‘비백인’ 등과 같은 ‘비규범성’과 ‘관련 있는’ 유전자의 ‘발견’(단일 유전자는 생명 현상의 유의미한 차이나 ‘결함’ 등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단일 ‘비정상’ 유전자의 ‘발견’과 같은 담론 자체가 정치경제적 개입의 산물이다)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미국 생명과학자들은 배아줄기세포를 응용해 유전자 수준에서 청각장애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사이언스 타임즈』, 2008.9.1).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들은 “청각장애의 예방과 치료로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 청력을 달성하게 될 것”(Emery, et al., 2010)이라고 선전했다. 이에 농인들은 농 문화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자신들을 의료적인 시각에서 치료해야 할 결함으로만 소환하는 과학계의 시각에 반발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국 레즈비언/농인의 사례처럼 기술을

12) 우리나라의 경우 ‘난임/불임’의 상황에 제공되는 보조생식기술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애초에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에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용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일부러’ 출산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08년 ‘인간 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률(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HFE)’(1990년 최초 제정됨)의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과학기술발달 특히 착상전 유전자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와 같은 기술이 ‘맞춤 아기(designer baby)’ 혹은 ‘구세주 형제(savior siblings)<sup>13)</sup>’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개정작업의 일차적 취지였다. 그러나 본 개정 법안은 PGD 기술로 태어날 아기의 ‘특정’ 형질을 일부러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 안에 그러한 ‘특정’ 형질로 ‘비정상성(abnormality)’을 포함시켰다.

인간 또는 배아의 유전자, 염색체, 미토콘드리아의 **비정상성(abnormality)**이 인간에게 아래와 같은 것을 가지게 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가진 비정상성으로 알려진 경우, 그러한 비정상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선호되어서는 안된다:

- (a) 심각한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
- (b) 심각한 질병 혹은,
- (c) 그 밖에 다른 심각한 의학적 상황 (HFE 14/4/9)(*The National Archives*, 2008)(강조는 인용자).

유전자, 염색체, 미토콘드리아의 수준에서 장애나 질병과 같은 ‘결함’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생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심지어 그럴 경우

---

13) ‘구세주 형제’는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에게 맞는 조직을 제공하기 위해 PGD 기술을 이용해 해당 자녀의 동생을 선별 출산한 부모의 사례에서 유래한 단어다. 이는 ‘맞춤 아기’만큼이나 생명윤리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유전적으로 선택된 아이가 질병을 앓는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은 그 사례가 ‘가족’ 내 형제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장기매매처럼 상업적 거래로써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로즈·로즈, 2015).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위 법조문은 많은 논란거리를 낳는다. 질병과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실제로 질병이나 장애를 확실히 가질 거라 하더라도 태어나게 하지 말아야 할 질병과 장애의 유형은 또 무엇인지 등을 판가름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일인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후로 영국 농인 커뮤니티는 해당 법안 작성이 농/청각장애와 '관련' 있다고 추정되는 유전자들의 '발견'에 뒤이은 것이었고, 따라서 사실상 농인의 재/생산 금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생학을 멈춰라'라는 구호와 함께 법안 취소 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모든 농인이 농인 자녀의 출산을 원하리라는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어날 생명의 사전 선별이 아무리 강력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장애/농의 존재를 완전히 소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장애/농을 '비정상'으로 소환해 재/생산 금지의 압력을 가한다고 비판했다(Emery, et al., 2010). 그러나 법안에 따라 재/생산에 있어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가 가해지게 되는 집단은 농인과 같이 유전적 성질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해당 생식기술을 일단 이용하게 하면, 본 법률에 의거해 특정 배아, 즉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형질을 가진 배아를 선별 기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생명기술과학이라는 기술·지식·경제의 복합적 장치는 인간 재생산을 생식세포와 유전자 단계까지 감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명'은 점점 더 생식세포와 유전자 단계에서부터 생명으로서 '자격'을 박탈/부여받는다. 이처럼 첨단 생명과학기술은 몸과 생명을 조절하고 규율하는 권력 장치가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기술적 '문지방'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국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적 장애/질환을 가진 장애여성들이 산전유전자검사는 물론 체외수정과 PGD 등으로 '선별' 기술을 받을 것을 거의 강요받다시피 한다

는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다(황지성, 2014). 인간 재생산을 둘러싼 유전자 단위의 정상/비정상 선별과 선별시술(치료)의 압력 속에서, ‘비정상’의 출산과 삶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여성)의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비정상’이라 여기는 주체들이 법적으로 이미 재생산 금지의 압력에 놓여있기도 하지만, 이런 세계 속에서 ‘비정상’ 뿐 아니라 실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기술에 의해 감시받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도록(즉 고가의 진단 테스트를 ‘소비’하도록) 부추겨진다. 미래 인구의 정상/비정상을 둘러싼 DNA 차원의 불확정성과 불안은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특히 ‘여성’)의 인간 재생산 그리고 삶 자체를 정상/비정상의 경계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위에서도 언급했듯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생산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준이 변화함으로써 체제가 승인하고 보장하는 육체성 또한 유연하게 (재)구성된다. 생명기술과학과 결합한 오늘날 생명정치의 역동은 비/합법 주체들을 갱신해 내면서 몸/정체성 정치학과 유연하게 동맹을 맺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비/합법의 경계를 오간다. 예를 들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몸의 생식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파트너가 없는 싱글이거나 동성커플일 경우 ‘장애’ 범주로 분류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서울신문』, 2016.10.24.; *The Telegraph*, October 20, 2016). 현재는 이성애커플이 의학적 ‘난임/불임(*infertility*)’으로 판명될 경우 ‘장애’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이들에게 체외수정을 비롯한 재생산의료기술 시술에 대한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WHO 관계자에 따르면, 싱글남녀와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들도 재생산을 위해 체외수정 등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본 결정의 취지다. 그러나 실제 싱글남녀와 성소수자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에 심각하게 노출돼 기본적 건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만을 위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출산을 제고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대된 상황, 그리고 배아 등 생체조직기술의 글로벌한 자본화 및 상업화라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규범은 ‘생산성’과 관련된다면 “어떤 종류의 퀴어성을 관용”(McRuer, 2003: 82)해 ‘합법적’인 퀴어/장애의 몸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퀴어와 장애의 몸, 즉 규범에서 벗어난 ‘비생산적’ 몸들이라도 기술을 이용해 (여기서는 ‘임신’이나 ‘출산’ 가능한 몸으로) ‘치료’ 및 ‘재활’될 수 있고, 따라서 체제의 재/생산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생산성’ 있는 주체로 (재)배치된다. 이와 같은 예는 ‘황우석 스캔들’을 통해 확인했듯, 특정 장애나 질환의 ‘치료’를 위한다는 표면적 명분으로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기술 분야에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쏟아 붓지만, 정작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회적 생존문제나 시설수용 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또한 발견된다. 특정한 장애나 질환의 ‘치료’ 가능성이 ‘생산성’으로 직결되는지를 두고 장애인 내부에서 ‘비/합법’ 주체들이 다시 나누어지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도 불구하고, HIV/에이즈 감염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치료를 거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sup>14)</sup> 장애인 권리 운동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제정 작업에 성공했지만, 본 법은 예산의 부족이나 현실 적용 가능성

14) 장차법은 장애의 등록 가능한 ‘종류’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보다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장차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이다. 현재 HIV/에이즈 감염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가능한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차법’상 장애인에는 해당될 수 있다(장애인법연구회, 2017;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4).

의 문제 등으로 인해 유보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늘면서 그 실효성이 지속적인 논란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HIV/에이즈 감염인 치료 거부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더 완강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치 및 확산시키고 있다. 결국 장차법으로 특정한 장애와 장애인이 ‘생산성’을 가진, 합법적 존재로 명시적으로 배치는 되었지만(혹은 배치되는 ‘대가로’), 장애 정체성 내부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따른 규범(Puar, 2015)<sup>15)</sup> (의 ‘생산성’)에 따라 정상/비정상, 합법/불법의 존재가 또 다시 (재)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서 문화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리사 두건의 분석처럼, 신자유주의는 계급정치 뿐 아니라 문화정치와 ‘정체성’ 정치를 통해 구성되며,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등 정치학의 “맥락에 따라 동맹을 구축”(두건, 2017: 29)하는 유연하고 복잡한 (때로는 모순적인) 체계인 것이다. 위 사례들에서 드러나듯, 오늘날 생명기술과학과 ‘자유주의 우생학’은 몸·정체성 정치, 문화, 경제적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맞물린 특수한 동맹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에서 비/정상, 비/생산적 주체들의 구분과 위계가 비정상/비생산적 주체들(의 생산성)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비정상/비생산적 정체성의 경계들을 가로질러 신자유주의적 ‘생산성’을 위한 ‘치료’, ‘재활’, ‘향상’의 경쟁적인 노력이 부추겨지고, 이 속에서 비/합법 주체가 끊임없이 갱신된다. 미래 인구의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두고 정상/비정상을 둘러싼 이와 같은 유연한 배치와 비확정성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더욱 강력한 통제와 감시의 각축장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처럼 규범은 ‘정상/비정상’ 몸, ‘합법/비합법’ 주체들을 가로질러 유연하게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속에서 규범 스스로를 안전하게 재/생산해 내는 것이다.

15) 2000년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HIV/에이즈의 주된 확산 경로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적 접촉, 성매매 여성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 등이다.

## 5. 페미니스트 몸·재/생산 정치학의 방향: 타자의 역사-시간성의 재구성

이 글이 살펴본 바와 같이 젠더와 섹슈얼리티, 장애, 인종, 계급 등에 따른 ‘타자’들의 몸과 재/생산은 가부장제와 국가주의,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교차하고 중첩되어온 장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장애, 인종, 계급 등에 따른 위계들을 가로지르고 (재)배치하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생산성’ 규범을 통해 작동한다. 생명기술과학의 생명정치는 미래 인구와 현재 살아있는 생명의 재/생산 모두 (잠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능’이 되도록 추동하지만, 개인적 치료·향상·재활의 가능성 역시 (소비력만 있다면) 넓어진다. 따라서 비/정상, 비/합법의 경계로 끊임없이 내몰리는 몸들에게 치료·향상·재활의 노력은 의무가 되며, 이 속에서 국가와 자본권력의 ‘생산성’이 갱신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이 글은 몸과 성, 재/생산이 “젠더의 육체화(corporealization)”(버틀러, 2008: 349)를 비롯한 다양한 타자의 몸·주체를 합법/비합법, 정상/비정상(재)배치하며 맥락적이고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을 탐문하는 작업으로부터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낙태죄’ 존치는 모든 여성의 몸을 (‘정상적’ 이성애 혼인관계 내에서만) 출산 하는 몸으로 강제하는 한편으로, ‘낙태죄’의 예외적 허용 조항<sup>16)</sup>은 정상적/합법적인 인간(여성)의 육체성 및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후자의 재/생산을 선별, 규제 해내고 있다. ‘낙태죄’와 낙태

16)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결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허용’ 법률 모두는 규범적·합법적 (여성) 육체성과 행위를 문제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도입된 ‘우생학적’ 낙태 허용 조항은 오늘날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제정 당시 우생학적 허용 한도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차선자, 2007)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한국의 개발경제·독재 정부 이래 국가가 출산하는 여성 뿐 아니라 모든 인간 몸의 ‘생산성’과 규범적 생명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배치함으로써 통치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강력한 역사적 증거다.<sup>17)</sup>

이 글은 이와 같이 인간의 몸과 재/생산을 비/정상, 비/합법의 구분과 경계에 배치하는 다층적 권력의 작동을 드러내기 위해 근대 국가 우생 정책부터 보다 최근의 ‘자유주의 우생학’ 문화까지 ‘시간의 겹쳐짐’을 살펴해보았다. 한편으로 국가주의적 가부장제 및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해 타자(의 생산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 배제가 진행된다. 또 한편, 오늘날 정치경제적 위기와 사회 재/생산의 불안 속에서 권력은 모두가 개인적·자유주의적 ‘극복’, ‘치료’, ‘향상’이라는 ‘합리성’에 매달리는 ‘불능’이 되는 몸들을 만들고 있다. ‘생산적’ 몸·주체로의 전환이라는 (불)가능성을 두고 주체들은 합법/비합법의 경계로 내몰리며, 이 속에서 임신과 출산 행위 그리고 ‘여성’의 몸은 자연히 더욱 첨예하게 ‘불능’을 둘러싼 각축장이 된다.

---

17) 한국의 ‘낙태죄’ 관련 여성운동진영 일각에서는 형법 상 낙태죄 폐지 방향의 대안으로 ‘사회경제적’ 사유 등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허용 한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선택 가능성을 넓히는 작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특정 상황의 여성들(가난, 혼인 유무, 연령, 젠더정체성과 성적지향, 다양한 장애나 질병 등)의 육체성과 행위를 또 다시 ‘비정상/비합법’으로 재/생산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성’이 몸과 성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 권한을 갖고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보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는, 이처럼 복잡한 층위로 다양한 타자들을 생산하고 위계화 하는 권력, 그리고 선별적으로 특정 인구의 재/생산을 장려/억제하는 권력에 대한 탐문 작업과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다. “열등한 종이 사라질수록, 비정상적인 개인들이 제거될수록, 종을 퇴화시키는 것이 줄어들수록”(푸코, 2015: 305-306) 인구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권력의 논리는 근대 국가의 헤게모니적이고 발전주의적인 “인간 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모한티, 2005: 69)의 핵심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몸·재/생산 정치학은 중심/주변, 정상/타자의 이분법적 구성논리 속에 은폐된 헤게모니 남성중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주의 및 자본주의의 중층적 이해관계 분석을 적극 요청한다.

일찍이 장애인 인권운동은 장애인을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의료화/병리화 하는 역사에 저항해 왔다. 장애 정치학은 장애가 ‘비정상’, ‘불능’으로 극복·치료되어야 할 상태가 아니며, 장애를 그와 같이 의료화하는 권력이 장애인의 시설화와 배제, 억압 등을 정당화하면서 비장애 중심 사회 토대를 재/생산 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 글이 논증한 바와 같이, 오늘날 권력은 ‘불능’이 되는 몸들의 ‘생산성’으로의 각축을 두고 갱신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몸(육체화)과 치료·향상(의 의무) 그리고 정치경제적 생산성이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새로운’ 권력 매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따라서 장애/비장애, 여/남을 비롯한 몸·정체성의 단선적 경계들을 급진적으로 해체하고 ‘불능의 정치학’으로 새로이 통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페미니즘의 정치학은 끊임없이 ‘다름’, ‘타자’들과의 조우를 통해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는 페미니즘 정치학의 ‘무질서’, ‘혼란’, ‘균열’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는 “서구 근대의 역사적 시간이 주장해온 보편적 역사(universal history)의 모



순과 한계를 드러”(김보명, 2016: 120)내고, 여성 그리고 다양한 타자들의 역사-시간성을 재구성해 낸다. 페미니즘 몸·재/생산 정치학이 앞으로 더 많은 ‘타자’들의 정치학과 만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이 노정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는 따라서 “교차하고 중첩되는 다층적 시간성”(김보명, 2016: 150)으로 연결돼, 결국 위기에 처한 역사적 시간성에 대한 대안과 가능성의 공간을 남겨두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보명(2016), “페미니즘 정치학, 역사적 시간, 그리고 인종적 차이: 미국 제2물결 페미니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2권 4호, 119-155쪽.
- 김선혜(2016), “베이비 마일리지(Baby Mileage): 초국적 보조생식기술산업과 재생산 윤리”, 『생명윤리포럼』, 제5권 4호, 1-12쪽.
- 김주희(2015), “여성 ‘몸-증권화’를 통한 한국 성산업의 정치경제적 전환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제111호, 142-173쪽.
- 나영(2017), “2016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의 정치 의제화를 시작하다”, 『페미니즘연구』, 제17권 1호, 301-320쪽.
- 나영정(2016), “재생산권리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생명윤리포럼』, 제5권 2호, 1-6쪽.
- 두건, 리사(2017), 『평등의 몰락: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가』, 한우리·홍보람 옮김, 서울: 현실문화, Duggan, L.(2003), *The Twilight of Equality?: Neoliberalism, Cultural Politics, and the Attack on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 라잔, 카우시크(2012), 『생명자본: 게놈 이후 생명의 구성』, 안수진 옮김, 서울: 그린비, Rajan, K.(2006), *Biocapital: The Constitution of Postgenomic Lif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루인(2017),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서울: 교양인, 57-90쪽.
- 로즈, 힐러리·스티븐 로즈(2015), 『급진과학으로 본 유전자, 세포, 뇌』, 김명진·김동광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Rose, H. and S. Rose(2013), *Genes, Cells and Brains: The Promethean Promises of the New Biology*, New York and London: Verso.
- 마라찌, 크리스티앙(2013),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심성보 옮김, 서울: 갈

- 무리, Marazzi, C.(2011), *The Violence of Financial Capitalism*, California: Semiotext(e).
- 모한티, 찬드라 탈파드(2005), 『경계 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문현아 옮김, 서울: 여이연, Mohanty, C.(2003),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ing Solidar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박찬중(2014), “한국 부채경제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 금융,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백영경(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1호, 111-143쪽.
- 버틀러, 주디스(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 파주: 문학동네, Butler, J.(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샌델, 마이클(2010),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서울: 동녘, Sandel, M.(2007), *The Case Against Perfec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서동진(2007),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 송제숙(2016), 『복지의 배신』, 추선영 옮김, 서울: 이후, Song, J. S.(2009), *South Koreans in the Debt Crisis: The Creation of a Neoliberal Welfare Socie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양현아(2005),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람생각.
- 엄혜진(2008), “생존회로”, 『여/성이론』, 제18권, 248-263쪽.
- 에스핑앤더슨, G.(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중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sping-Anderso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웬델, 수전(2013),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강진영 · 김은정 · 황지성 옮김, 서울: 그린비, Wendell, S.(1996), *The Rejected*

*Body: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New York: Routledge.

장애인법연구회(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파주: 나남.

정민우(2012), “퀴어 이론, 슬픈 모국어”, 『문화와 사회』, 제13권, 53-100쪽.

조은(2013),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서울: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차선자(2007),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7권 2호, 189-213쪽.

최철웅(2016), “일상생활의 금융화와 ‘금융적 포섭’”, 『말과 활』, 제12권, 331-346쪽.

클린스, 패트리샤(2009), 『흑인 페미니즘 사상: 지식, 의식, 그리고 힘 기르기의 정치』, 박미선·주해연 옮김, 서울: 여이연, Collins, P.(199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쿠퍼, 멜린다(2016), 『잉여로서의 생명: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명기술과 자본주의』, 안성우 옮김, 서울: 갈무리, Cooper, M.(2008), *Life as Surplus*, Washington: Washington University Press.

클라프, 패트리샤(2015), “정동적 전화: 정치경제, 바이오미디어, 신체들”, 『정동이론: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엮음,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서울: 갈무리, 333-361쪽, Clough, P. T.(2010), “The Affective Turn: Political Economy, Biomedicine, and Bodies”, in *The Affect Theory Reader*, eds. M. Gregg and C. J. Seigworth,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206-228.

토리(2010), “한국 사회 LGBT의 성적 시민권: 비판과 전망”, 『여/성이론』, 제23권, 10-28쪽.

푸코, 미셸(2003),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 옮김, 서울: 나남출

- 판, Foucault, M.(199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and Toronto: Vintage.
- \_\_\_\_\_ (2004), 『성의 역사 1: 얽의 의지』,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출판,
- Foucault, M.(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New York and Toronto: Vintage.
- \_\_\_\_\_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김상운 옮김, 서울: 난장,
- Foucault, M.(1997),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75-1976*, Paris: Gallimard.
- 페데리치, 실비아(2016),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황성원 옮김, 서울: 갈무리, Federici, S.(2012),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California: PM Press.
- 프레이저, 낸시(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서울: 들베개,
- Fraser, N.(2013), *Fortunes of Feminism*, New York and London: Verso.
- 하정옥(2014), “두개의 성과 성차에 대한 과학적 신념”,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사)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서울: 동녘, 131-162쪽.
- 해러웨이, 다나(2007),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 여성인간©\_앙코마우스 TM를\_만나다』, 민경숙 옮김, 서울: 갈무리, Haraway, D.(1997), *Modest Witness@Second\_Millemium, FemailMan\_Meets\_OncoMouseTM: Feminism and Technoscience*, New York: Routledge.
- 황지성(2014), “생명공학기술 시대의 장애와 재생산: ‘선택권’과 ‘생명권’을 넘어 재생산의 정치로”, 『페미니즘연구』, 제14권 1호, 229-254쪽.
- Connell, R.(2012), “Gender, Health and Theory: Conceptualizing the Issue, in Local and World Perspectiv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4, pp. 1675-1683.
- Corna, L. M.(2013),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Socioeconomic

- Inequalities in Health: A Critical Review of Conceptual Framework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8, pp. 150-159.
- Davis, L.(1995), *Enforcing Normalcy: Disability, Deafness, and the Body*, New York and London: Verso.
- Dwyer, R.(2013), “The Care Economy?: Gender, Economic Restructuring, and Job Polarization in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3), pp. 390-416.
- Emery, S., A. Middleton, and G. Turner(2010), “Whose Deaf Genes Are They Anyway?: The Deaf Community’s Challenge to Legislation on Embryo Selection”, *Sign Language Studies*, 10(2), pp. 155-169.
- Fausto-Sterling, A.(2000), *Sexing the Body*, New York: Basic books.
- Kafer, A.(2013), *Feminist, Queer, Crip*,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Kim, E.(2017), *Curative Violence: Rehabilitating Disability, Gender, and Sexuality in Modern Kore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McRuer, R.(2003), “As Good as It Gets: Queer Theory and Critical Disability”,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9, pp. 79-105.
- Metzl, J.(2010), “Introduction: Why “Against Health?””, in *Against Health: How Health Became the New Morality*, ed. J. Metzl and A. Kirkland,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Price, J. and M. Shildrick(1999), “Openings on the Body: A Critical Introduction”, in *Feminist Theory and the Body: A Reader*, ed. J. Price and M. Shildrick, New York: Routledge.
- Puar, J.(2014), “The Cost of Getting Better: Ability and Debility”, in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4<sup>th</sup> edition), ed. L. Davis, New York: Routledge.
- \_\_\_\_\_(2015), “Bodies With New Organs: Becoming Trans, Becoming Disabled”, *Social Text*, 124(33), pp. 149-158.

Sullivan, N. and S. Stryker(2009), “Introduction”, in *Somatechnics: Queering the Technologisation of Bodies*, ed. N. Sullivan and S. Murray, Farnham, Burlington: Ashgate.

#### 〈신문 자료〉

『사이언스 타임즈』, 2008.9.1, “청각장애, 유전자 치료 가능성 열려”.

『서울신문』, 2016.10.24, “성관계 상대 없으면 ‘장애’… WHO 결정 숨은 뜻은?”.

*The Telegraph*, October 20, 2016, “Single Men Will Get the Right to Start a Family Under New Definition of Infertility”.

*The Washington Post*, March 3, 2002, “A World of Their Own”.

####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3), <http://125.60.26.84/lsefinfoP.do?lsiSeq=142601#>  
(검색일: 2017.10.31).

백영경(2006), “정상/비정상 한국인 가르는 출산장려책: 저출산 위기론 속 ‘재생산의 정치학’”, 『여성주의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2893&section=sc1](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2893&section=sc1)(검색일: 2017.10.29).

\_\_\_\_\_(2013), “공포에 발목 잡힌 건강”, 『한국일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8580.html>(검색일: 2017.10.29).

성과 재생산 포럼(2016), <https://www.facebook.com/reproductiverightsforum/>  
(검색일: 2017.10.31).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2014), “성명서: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http://www.aidsmove.net/>(검색일: 2017.10.31).

Murdock, S.(2013), “North Carolina Eugenics: Sterilization Program Victims Offered Funds”, *Huffingtonpost*, <https://www.huffingtonpost.com/>

2013/07/26/north-carolina-eugenics-sterilization-victims-offered-funds\_n  
\_3657982.html(검색일: 2017.10.29).

The National Archives,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22/  
section/14](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22/section/14)(검색일: 2017.10.29).

(논문 투고일: 2017.11.02, 심사 확정일: 2017.12.07, 게재 확정일: 2017.12.18)



〈Abstract〉

## Debilitating Bodies: The Body, Technologies, and Political Economy of Re/Production

**Hwang, Jisung\***

This article aims to raise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body and re/production politics of feminism to the technologies and operation of power of political economy that constitute the “normal” body. The history of (re)production of “normal” body standards that are constantly updated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economic leads to more powerful surveillance and control over the re/producing body and flexibly (re)arrange the subjects in the margins of ab/normal and il/legal. Thus, interrogating the control of the body and re/production is the task of revealing and interrogating the function of intersected as well as complicated power which distinguish individuals and populations by the “normativity”.

**Key words:** body, re/production, somatechnics, political economy, feminist politics

---

\* Ph.D. Stud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